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. 3. 15 선고 2022가단12773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인천지방법원 2024. 6. 5 선고 2023나58537 판결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. 3. 15 선고 2022가단127735 판결

전문

원 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시그니처
담당변호사 고상현

피 고 주식회사 B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트너
담당변호사 심정구
변 론 종 결 2023. 2. 1.
판 결 선 고 2023. 3. 15.

주문

-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-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사이에 인천 계양구 D 전 268㎡, 인천 계양구 E 잡종지 646㎡, 인천 계양구 F 임야 72㎡ 및 인천 계양구 E, D, F 지상 각 건물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20. 11. 25. 체결된 매매계약을 20,429,479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20,429,47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6. 7. 19. C을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33737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‘C은 원고에게 26,196,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7. 2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’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, 위 판결은 2016. 10. 25. 확정되었다.

나. C은 2020. 10. 27.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에게 인천 계양구 H 전 990㎡, 인천 계양구 I 전 886㎡, 인천 계양구 J 답 793㎡, 인천 계양구 K 전 1,250㎡, 인천 계양구 L 전 2,916㎡(이하 ‘이 사건 소외 부동산’이라 한다)를 8억 원에 매도하고,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.

다. C은 2020. 11. 25.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7억 원에 매도(이하 위 매매계약을 ‘이 사건 매매계약’이라 한다)하고, 2020. 12. 4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3호증, 을 제2, 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2021. 1. 6.경 C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추심하여 위 확정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 17,343,319원 및 원금 8,852,881원에 충당하였을 뿐, 나머지 원금 17,343,319원(= 26,196,200원 - 8,852,881원)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2. 3. 16.까지의 지연손해금

3,086,160원 합계 20,429,479원의 채권이 있다. 그런데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,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의 채권인 20,429,47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20,429,4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

가. 피고의 본안 전 항변

피고는 원고가 C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한 2021. 1. 6.경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,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.

나. 판단

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,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(민법 제406조 제2항).

살피건대, 앞서 든 증거들, 갑 제14, 18, 1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,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안 날로부터 1년을 도과한 2022. 3. 16.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,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며,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.

1) 원고는 2016. 7. 25. 인천지방법원 2016카단4044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와 이 사건 소외 부동산에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고, 그 후 C은 인천지방법원 2020카기1656호로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하였고, 위 법원은 2020. 12. 7. 인용 결정을 하였으며, 원고는 이에 따라 공탁된 공탁금 26,196,200원을 2021. 1. 6.경 추심하였다. 위 가압류취소 및 공탁 추심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, 원고는 적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사실을 알고 있었다.

2) 원고가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행일은 2020. 12. 23.이고,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소외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 중이었던 인천지방법원 M에 관하여 원고가 자료를 조회한 시기는 2020. 12.

31.이다.

3)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소외 부동산은 C의 유일한 부동산이므로,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보인다.

4. 결 론

그렇다면,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윤아영